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소재 의대등 평가인증 기준 완화〉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22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학·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등)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제11조의2(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교 중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소재 학교에 대하여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인정기관의 <u>완화된 평가·인증</u> , 제4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5항의-----.
---	---

고등교육의 평가·인증 제도는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인정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의 실시는 학교의 신청에 의하나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료인 각각의 면허 취득 요건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대학'의 졸업을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음²⁾.

1)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인증 절차 및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의학의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에 따라 9개 평가영역³⁾, 36개 평가부문에 대해 대상 학교들을 평가·인증하고 있음(참고자료 1·2 참조).

개정안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실과 함께⁴⁾,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도권(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함)⁵⁾ 외 지역 소재 대학의 평가 인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3) (9개 평가영역)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제와 행정, 지속적 개선

4) 일례로 수도권/비수도권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증가인원 11,561명 중 수도권은 8,623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2,938명에 그쳤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	총계
2019	45,633	40,489	86,122
2024(7월)	54,256	43,427	97,683
증감	8,623	2,938	11,561

자료 : 보건복지부

5) 개정안은 지방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다만, 평가인증은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인 양성에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교육과정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지역소재 대학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의료수요자(환자) 측면에서는 충분한 의료교육과정의 질이 관리되지 않은 의료인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건강권에 대한 침해와 함께 의료제도에 대한 신뢰가 문제될 수 있고⁶⁾,

지역대학을 졸업한 의료인 측면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음에 따라 오히려 취업 등 진로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⁷⁾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부 및 관련 대학, 의료과정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입장임.

6)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7) 최근 5년간 의대 졸업생 9807명 중 절반이 넘는 5730명(58.4%)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취업하였는데, 비수도권 의대 중 수도권병원 취업률이 울산 149명(80.5%), 강원 665명(65.6%), 충남 370명(60.1%)이었고, 의대 졸업생 가운데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은 경북 17명(3.3%), 울산 16명(8.6%), 경남과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이었음(자료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에서 재인용)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신중검토

-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심화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취지에는 동감하나, 평가인증을 통한 의료교육 질 관리라는 제도 운영의 취지, 대학간 형평성, 지방소재 대학 및 졸업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함.

【의료과정 평가인증 인정기관】 : 신중검토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의 기본 목적과 상치되며, 부실 의과대학 및 의사 양산의 우려가 있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평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고, 대학 교육수준의 저하, 간호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학】

- 54개 대학(수도권 16개교, 지방 소재 38개교)
 - 평가인증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차등 적용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평가 기준을 이원화하는 경우 지방소재 대학 및 졸업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지방소재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신입생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 1개교(제주한라대)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육수준 차이 심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찬성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자료1]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ASK2019) 평가영역·부문별 기준수

평가영역·부문별 기준 수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인증기준 수		
		기본기준	우수기준	합계
1. 사명과 성과	1.1 사명	3	1	4
	1.2 대학의 자율성	1	-	1
	1.3 교육성과	3	1	4
	1.4 사명과 교육성과 수립	1	1	2
	소계	8	3	11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3	1	4
	2.2 과학적 방법	3	-	3
	2.3 기초의학	2	1	3
	2.4 의료인문학	1	1	2
	2.5 임상학과 술기	4	3	7
	2.6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2	2	4
	2.7 교육과정 관리	2	-	2
	2.8 의료행위와 보건의료분야의 연계	1	1	2
	소계	18	9	27
3. 학생평가	3.1 평가방법	4	1	5
	3.2 평가와 학습의 관계	4	2	6
	소계	8	3	11
4. 학생	4.1 입학정책과 선발	1	3	4
	4.2 입학정원	1	-	1
	4.3 학생상담과 지원	6	3	9
	4.4 학생대표	2	-	2
	소계	10	6	16
5. 교수	5.1 채용과 선발정책	6	1	7
	5.2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6	1	7
	소계	12	2	14
6. 교육자원	6.1 시설	8	1	9
	6.2 임상실습자원	3	1	4
	6.3 정보기술	1	2	3
	6.4 의학연구와 의과학자 양성	3	1	4
	6.5 교육 전문성	2	3	5
	6.6 교육적 교류	1	1	2
	소계	18	9	27
7. 교육평가	7.1 교육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체제	3	1	4
	7.2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	1	1	2
	7.3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능력	1	1	2
	7.4 이해관계자의 참여	1	-	1
	소계	6	3	9
8. 대학운영체제와 행정	8.1 대학운영체제	4	2	6
	8.2 학장과 보직자	1	1	2
	8.3 교육예산과 자원 할당	2	-	2
	8.4 행정직원과 관리	1	1	2
	8.5 보건의료분야와의 상호작용	1	1	2
	소계	9	5	14
9. 지속적 개선	9.0 지속적 개선	3	11	14
	소계	3	11	14
합계	36	92	51	143

[참고자료2] 의료교육과정 인정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인정기관 지정기간	평가 대상 학교
의학	한국대학교육평가원	2024. 5. 12.~2029. 5. 11. <5년>	40개 교
간호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4. 11. 28.~2029. 11. 27. <5년>	198개 교
치의학	한국치의대학교육평가원	2020. 1. 8.~2025. 1. 7. <5년>	11개 교
한의학	한국한의대학교육평가원	2021. 5. 20.~2026. 5. 19. <5년>	12개 교